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1-376(2011. 12. 15.)호로 최초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36(2016. 8. 1.)호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7-56(2017. 7. 28.)호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된 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재생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8. 26.

군 포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8.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변경없음

나. 당정2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정 [군포시 고시 제2017-56호]	변경	비고																								
건축물 배 치	·건축물의 배치시 지정된 건축한계선을 준수하도록 계획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대상지내 부족한 보행공간 확보 ·개별필지는 전면도로에서 도로폭원에 따라 최소 2m~최대 5m까지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건축한계 선을 설정하고 전면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 또는 녹지대로 설치 권장	좌동																									
방향성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저층부(5층이하)와 고층부 (6층이상)로 구분하여 저층부는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토록 하여 건축물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고층부는 자율화하여 가로변 위압감 방지 및 고층부 에서의 개방감을 확보 ·도로변 가각에 접한 대지는 벽면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건축을 유도하여 부정형의 돌출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토록 계획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계획	좌동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확폭 등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 하는 것으로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 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계획 ·건축한계선은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대상지 외부도로는 3m~5m이상, 대상지 내부도로는 2m이상을 확보하여 보행공간을 보도로 확보토록 계획 - 중로1-16호선변 : 4m - 중로1-56호선변 : 3m - 중로2-66호선변 : 2m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 또는 녹지대로 활용하도록 계획	좌동																									
담장	·1.5m이하의 식재 담장으로 설치	·3.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및 식재 담장으로 설치																									
색채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연 선표색계 사용) <table><tr><th>구분</th><th>색상</th><th>명도</th><th>채도</th><th>적용범위</th><th>비율</th></tr><tr><td>주조색</td><td>Gray 또는 YR계열</td><td>8~10 사이의 중/고명도</td><td>1~4 사이의 저채도</td><td>건물입면의 중고층부</td><td>전체면적의 60~80%</td></tr><tr><td>보조색</td><td>WarmGre y 또는 YR계열</td><td>4~7사이의 중명도</td><td>2~6 사이의 중/저채도</td><td>건물입면 의 저층부, 옥탑부</td><td>전체면적의 20~30%</td></tr><tr><td>강조색</td><td>자율</td><td>자율</td><td>자율</td><td>건물입면의 일부장식부</td><td>전체면적의 5~10%</td></tr></table>	구분	색상	명도	채도	적용범위	비율	주조색	Gray 또는 YR계열	8~10 사이의 중/고명도	1~4 사이의 저채도	건물입면의 중고층부	전체면적의 60~80%	보조색	WarmGre y 또는 YR계열	4~7사이의 중명도	2~6 사이의 중/저채도	건물입면 의 저층부, 옥탑부	전체면적의 20~30%	강조색	자율	자율	자율	건물입면의 일부장식부	전체면적의 5~10%	좌동	
구분	색상	명도	채도	적용범위	비율																						
주조색	Gray 또는 YR계열	8~10 사이의 중/고명도	1~4 사이의 저채도	건물입면의 중고층부	전체면적의 60~80%																						
보조색	WarmGre y 또는 YR계열	4~7사이의 중명도	2~6 사이의 중/저채도	건물입면 의 저층부, 옥탑부	전체면적의 20~30%																						
강조색	자율	자율	자율	건물입면의 일부장식부	전체면적의 5~10%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